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100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 박정현·박해철·이기헌

김한규 · 김남근 · 김우영

박홍배 • 박희승 • 윤건영

서미화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 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 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법률 제 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를 "징발해제하거나 양여, 매각 등 처분하거나 공중(公衆)에 게 개방하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④ (생 략)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⑤		
을 <u>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u>	<u>징발해제하거나 양여, 매각</u>		
<u>등 처분하기</u> 전에 지상물, 지하	등 처분하거나 공중(公衆)에게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	<u> 개방하기</u>		
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